

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요령 안내

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

앞서 『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』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(‘20.1.23.) 한 후속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드리오니,

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자 확산 방지 등 어르신 ·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또한, 질병관리본부의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시고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☎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0. 1.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안내

1. 【 1단계 : 감염 증상 확인 】

- (어르신)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
촉탁의 등 방문 진료 시 관련사항 집중 체크
※ 증상 : 발열(37.5° 이상)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
- 어르신 외박·외출 후 유 증상 여부 집중 확인
- (종사자) 출·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 사용
- (외부인) 호흡기 증상 및 발열 등 유증상자 면회 자제 요청
- (위생관리)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청소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

☞ 어르신, 종사자,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
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

< 종사자 병가 시 근무시간 인정 >

■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』

· 제12조제1항제1호 라목(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: 연간 30일 이내)에 따라
유급인 경우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. 기타 처방전, 진단서 등 사유 증빙
자료 보관(자세한 내용 세부사항 전문 참조)

2. 【 2단계 : 의심 대상자 관리 】

-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☎1339 또는 보건소로
신고하여 사례 부합여부 확인(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)
-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감염 확진
전까지 아침, 저녁으로 2회 이상 체온 확인 등 관리 철저
- 의심환자 및 담당 종사자를 독립된 공간에 격리
-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종사자에게 교육

< 호흡기 에티켓 >

-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, 방문객들에게 적용
 - 기침을 할 때,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.
 -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.
 -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.
 -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.
 -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.

3. 【 3단계 : 진단 및 연락】

- 감염의심 종사자 및 어르신(보호자 연락)은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부를 진단 ➡ 병원 치료
 - ※ 완치시까지 시설과 격리되어 병·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
-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즉시 관할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(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)으로 전염병 발생 사실을 유선보고

[참고] 2020년1월28일 기준 확인된 정보 (출처:질병관리본부)

- (병원체) 신종코로나바이러스(2019 novel Coronavirus)
- (감염원)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
- (전파경로) 동물 → 사람 → 사람 전파 추정
 - 사람간 전파는 비말(호흡기 분비물) 전파 추정
 - 가족간, 의료기간 내 2차감염 확인
- (잠복기) 불확실
 - * 일반적인 포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-14일 추정
- (임상증상)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), 폐렴
- (위중도) 폐렴 보고사례 중 25% 정도가 중증/위중 환자
 - * 고위험군은 고연령, 기저질환자
- (치명률) 약 4%